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개발사업 정산체계가 상이하여 출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의3)

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안전 CCTV 관제 모델 개발의 학습데이터 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자체 보유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3조의3)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시험과목, 시험방법, 면제기준, 응시자격, 자격심의회의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연금 사용 항목 및 사용 실적 일치(안 제79조의3)

출연금의 사용 항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같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일치시키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의 각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데이터 요청·제공·처리 방안 등 마련(안 제83조의3)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종류, 해당 데이터의 목록, 제공기관, 제공범위 등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데이터 제공표준과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분석·처리 방안 신설

다.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우선 임명토록 권고(안 제83조의6제4항 신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하여 당해 기관의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라.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기준 설정(안 제83조의7 신설)

공인된 재난분야 자격을 소지한 사람과 관련학과 및 유관기관에서 재난안전 분야 전문지식을 쌓은 사람에게 제1차 시험에 한하여 일부 과목을 면제하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유인 마련

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안 제83조의9 및 제83조의10 신설)

자격시험은 제1차 객관식 및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구성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지속적인 인재유입을 위하여 2023년 고시된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3-15호)의 반영 및 응시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과목을 미리 공표하여 시험응시예정자에게 시험준비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바. 재난관리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안 제83조의12 신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범위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여 관련 기관에 채용기준 제공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체회계감사 의견서와 함께 출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의3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 법 제66조의9, 법 제74조의2 및 법 제74조의3에 따른 정보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3. 「기상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데이터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집된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영
상정보

8. 그 밖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데이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데이터의 목록, 제공기관, 갱신주
기, 데이터 유형 및 제공의 범위 등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을 제83조의5에 따른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거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할 수 있으며, 공유 또는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정
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3조의6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다.

제83조의7부터 제83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7(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일부 과

목을 면제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학과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거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 재난관리총론

2. 다음 각 목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재기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 재난관리총론

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 재난위험평가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재난관리총론

② 제1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3조의8(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

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및 시험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재난관리사의 인력 수급 상황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험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응시원서 접수절차
5. 제1차시험 면제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 절차
6. 합격자 공고의 일시 및 방법
7. 그 밖의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

기시험에 의한다.

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 수수료 및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합격자 공고 등 기타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① 제1차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총론
2. 재난위험평가
3. 재난예방·대비
4. 재난수습·복구

②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2.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③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⑤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다.

제83조의11(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인재난관리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국장급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라.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마.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재난안전관리분야에 관한 경험

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12(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①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재기사
 5. 그 밖에 재난관리 전문인력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사람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두 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

험·연수·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격 시험·연수·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u>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 한다.</u>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 -----.
1. <u>연구원의 인건비</u>	<삭 제>
2. <u>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u>	<삭 제>
3. <u>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u>	<삭 제>
4. <u>위탁연구개발비</u>	<삭 제>
② <u>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적어 출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② <u>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와 함께 출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u>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연금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u>	
2. <u>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u>	

사 의견서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 법 제66조의9, 법 제74조의2 및 법 제74조의3에 따른 정보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3. 「기상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데이터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신 설>

<신 설>

제83조의6(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① ~ ③ (생략)

<신 설>

를」 제22조에 따라 수집된 이
송환자에 대한 정보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영상정보

8. 그 밖에 재난의 예방·대비·대
응·복구에 필요한 데이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데이터의 목록, 제공기관,
갱신주기, 데이터 유형 및 제공
의 범위 등을 포함하는 재난안
전데이터 제공 표준을 제83조의
5에 따른 재난안전정보공동이
용협의회를 거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할 수 있
으며, 공유 또는 공개할 경우에
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83조의6(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다.

⑤ ----- 제4항-----

-----.

제83조의7(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학과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거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 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 재난관리총론
2. 다음 각 목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

<신 설>

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재기사 또는 「자

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

8조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

재난관리총론

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

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 재난위

험평가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 재난관리총론

② 제1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

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

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3조의8(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의 응시자격) ① 공인재난

<신 설>

관리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의 시행·공고 및 시험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재난관리사의 인력 수급 상황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험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신 설>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응시원서 접수절차

5. 제1차시험 면제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 절차

6. 합격자 공고의 일시 및 방법

7. 그 밖의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에 의한다.

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 수수료 및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합격자 공고 등 기타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신 설>

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① 제1차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총론
2. 재난위험평가
3. 재난예방·대비
4. 재난수습·복구

②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2.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③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⑤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83조의11(공인재난관리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 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인재난관리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국장급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라.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

<신 설>

상인 기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마.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재난안전관리분야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12(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① 법 제7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신 설>

난관리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재난관

리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

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재기사

5. 그 밖에 재난관리 전문인력

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사람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

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두

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공인재난

관리사 자격시험·연수·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①・② (생략) ④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능력을 갖춘 법인</u> 2. <u>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u> 3. 그 밖에 <u>행정안전부장관이 자격 시험·연수·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u>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u>제1항 및 제5항</u>----- ----- -----. ⑦ ----- <u>제1항 및 제5항</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4124